

의안
번호

1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4. 18.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경이 의원 외 8명

나. 의안번호 : 제119호

다. 제출일자 : 2023. 04. 07.

라. 회부일자 : 2023. 04. 11.

2. 제안이유

- 성북구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하여 실종예방기관·단체 협력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실종예방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규정 추가 및 정비 (안 제2조)
- 나.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및 실종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 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0호)
- 다.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및 제8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4. 07. ~ 2023. 04.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실종 예방 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아울러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과 위탁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정비

-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에 맞게 인용하여 정비하였음.

나. 안 제2조(정의)

- 본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실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센터의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음.

다.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서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사회보장계획 안에서 성북구에 필요한 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연구 용역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안 제6조의2(지원사업)신설

-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원사업 외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과 사용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최근 5년간 장애인의 실종 신고 접수 건수가 연평균 8,277건, 미발견 17명, 발견자 중 사망자가 45명에 이르는 점을 보았을 때 관내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최근 5년간 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실종접수 현황〉¹⁾

단위: 명/건								
구분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비율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7,710,946	8,206,537	-
	접수	19,870	19,956	21,980	21,551	19,146	20,501	0.25%
	미발견	3	3	6	9	105	25	0.12%
	발견(사망)	22	24	24	30	21	24	0.12%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	인구수	318,205	326,776	335,760	344,594	351,435	335,354	-
	접수	8,542	8,525	8,881	8,360	7,078	8,277	2.47%
	미발견	5	5	9	21	47	17	0.21%
	발견(사망)	39	46	47	47	47	45	0.55%
치매환자	인구수	545,750	624,772	712,974	799,411	632,827	663,147	-
	접수	9,869	10,308	12,131	12,479	12,272	11,412	1.72%
	미발견	6	6	3	3	9	5	0.05%
	발견(사망)	91	104	128	97	120	108	0.95%

1) 출처 : 비마이너 기사, 2021. 2. 18. 「발달장애인 실종, 5년간 평균 8000건...아동 실종보다 10배 많아」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4조는²⁾ 지방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책무와 예산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시비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지원한 바 있음.³⁾



-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3)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성북구 발달장애인 52명(저소득 27명, 일반 25명)
- 사업기간 : 2022년 6월~9월
- 지원내용 : 스마트기기 및 통신비 지원(2년)
- 소요예산 : 15,600천원(300천원×52명 =15,600천원), 시비100%

마. 안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제8조의2(관리·운영의 위탁)신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됨.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

소재지	면적(㎡)	연간사업비 (백만원)	위탁기간	운영주체	교육 인원	운영 조직
성북구 종암로 18 거산프라자(3.4층)	596.18㎡	· 합계 6억 7,564만원 · 운영비 - 5억 5084만원 · 임대료 - 1억 2,480만원	2021.1~ 2023.12.31. (3년)	(사)서울장애인 부모연대	30명	12명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성북구 장애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계	발달장애		지체 장애	뇌병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신장 장애	정신 장애	언어	기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7,471 (4.1%)	1,448 (8.3%)	272 (18.8%)	7,513 (43.0%)	1,787 (10.2%)	1,943 (11.1%)	2,652 (15.2%)	837 (4.8%)	643 (3.7%)	175 (1.0%)	473 (2.7%)
	1,176 (81.2%)									